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1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빈곤·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으로 계층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 나.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 다.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완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안 제3~6조)
- 나. 시장은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안 제7조)
- 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촉진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안 제8조)
- 라. 사회적기업에 공유지 임대 가능, 불용물품 등을 무상양여 가능(안 제9조)

마.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노무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재정지원 가능(안 제10~11조)

바.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및 판로 개척 강구(안 제15조)

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육성에 민간기업·단체 등의 참여 확충, 사회적 기업의 홍보방안 강구(안 제16~18조)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나.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제통상국장, 구미고용종합지원센터에서
적정 위치에 있는 자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사회복지관련 단체관계자, 사회복지 및 기업
경영에 관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구미시와 경상북도,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기업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구미시 출연기관,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 등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직원 구성(유·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교부방법)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사회적기업 등과 사업위탁 표준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에 준한다.

제13조(목적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에 대하여 감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하천쓰레기 수거, 문화재 주변 정비, 도로변 풀베기사업, 행정 사무보조, 청소용역 등)등 단순 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 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8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 삭제<2010.6.8>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

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제22조(벌칙)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8217호,2007.1.3>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 운영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와 시·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3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적 기술·지식 제공을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적 기술·지식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도 사무의 민간 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도지사는 지역내 민간 기업·단체 등

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제12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